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
제 권 판 결

사 건 2007카공 33 공시최고
신 청 인 배 의 한(680429-*****)
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878-2 8/2
대동아파트 104동 802호
판결선고 2007. 10. 2

주 문

아래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
이 유

아래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. 6. 20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,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. 10. 2. 14:00 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,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7년 10월 일

판 사 권 태 관

<증서의 표시>

- 종 류 : 약속어음
- 번 호 : 자가00032047
- 금 액 : 5,000,000
- 발행일 : 2007. 4. 30
- 발행인 : 우리마트
- 지급지 : 경남 창녕